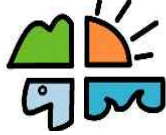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1185호 2018년 12월 21일(금)

고 시

- 속초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

속초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

1. 속초 도시관리계획(시설: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철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8년 12월 21일

속 초 시 장

가.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: 아래조서 참조

나.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: 실음생략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조서

가. 교통 시설

■ 도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최 결 정 초 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
기정	중로	3	58	12	국지 도로	955	중2-29 대포29답	중1-16 도문1251-7답	일반 도로	2015.10.16 (속고 제2015-48호)	
변경	중로	3	58	12	국지 도로	955	중2-29 대포29답	중1-16 도문1251-7답	일반 도로		

■ 도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사유서

구분	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변경	중로3-58	중로3-58	○ 선형변경	○ 현황여건(동해고속도로 교량 교각부 및 기존 현황도로)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로선형 일부 조정